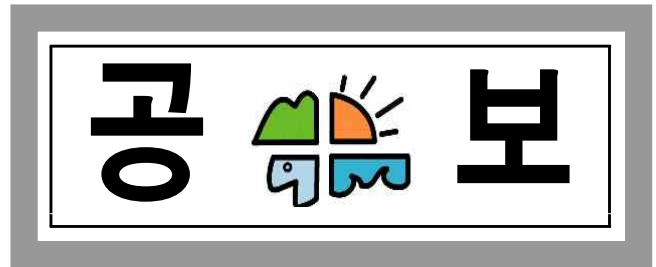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95호 2016년 6월 10일(금)

공 고

○ 속초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속초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속초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6조)
-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 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기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제9조)
-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공보팀)
- 연락처 : 033-639-2410 (FAX 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공보팀(033-639-2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홍보기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및 주민 상호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별표 1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SNS 홍보기자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

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홍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SNS 홍보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홍보기자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SNS 홍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홍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SNS 홍보기자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회의,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홍보기자에게 취재 원고료 및 취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민 참여자 기념품 등 제공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대 상	구 분	선정방식	1명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 당 제공액수 한도
일반 시민 참여자	이벤트 참여	선착순이나 추천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비 고

1. “이벤트 참여”란 시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 또는 시정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